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8

2015-8호



■ 의정·입법칼럼

- 유상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입법고문 활동을 뒤돌아보며: 지식과 지혜"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4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등 5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의정 · 입법 칼럼

- ▶ 입법 · 의정고문 유상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입법고문 활동을 뒤돌아보며: 지식과 지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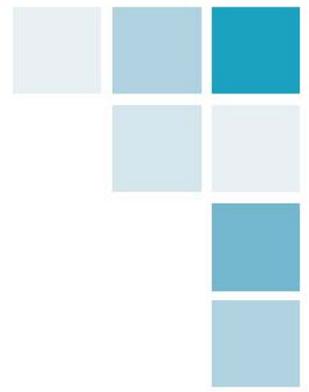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8)
- ▶ 대전시의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9)
- ▶ 전북도의회 진로직업 조례제정 추진 (11)
- ▶ 경북도의회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12)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15)
- ▶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 ▶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19)
- ▶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1)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2)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25)
-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27)
- ▶ 장성군 먼지 · 소음 ·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30)
-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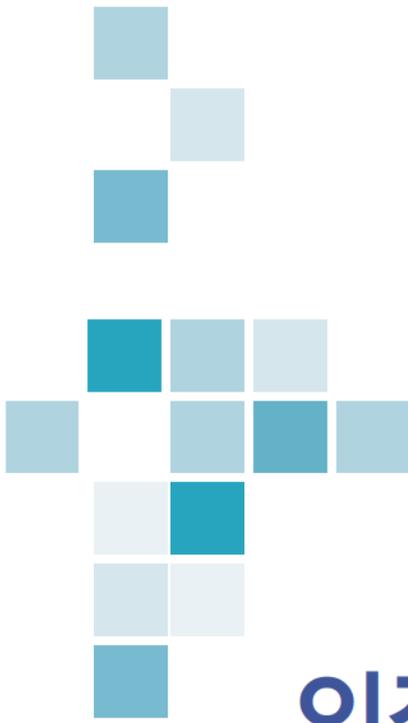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37)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0)
- ▶ 관광진흥법 (41)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2)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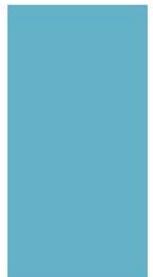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47)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례 (49)





의정 · 입법칼럼



입법고문 활동을 뒤돌아보며: 지식과 지혜

<유상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충청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한지도 약 5년이 되었다. 나의 거친 자문이 충청남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기를 바라본다. 충청남도 조례안 또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면서 나의 부족함으로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생활해온 나는

‘사실상 서울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서울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명절 때 선산을 찾아가 성묘하는 수준의 애향심이지만 고향이란 나의 유전인자 속에 애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보다.

조례안 등에 관한 자문의뢰가 이메일을 통해 날아 들어오면 인쇄를 한 후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읽어 보면서 조례 제·개정 이유를 이해 한 후 법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왜 일까?

수차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언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해결의 난제처럼 잊혀 있다가 다시 기억 속에 살아나 나를 괴롭히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어렵풋하지만 답의 윤곽을 찾은 것 같다. 그나마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세대, 지역,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이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은 선택을 합리화하고 간혹 강요하기 까지 한다. 어떤 때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입맛에 따라 논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당화한다. 지식은 사람을 거침없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옳고 그름의 선이 분명해서 선택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지혜는 말하려하기 보다는 들으려 하며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이다.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특히 선택의 순간에 선택받지 못한, ‘우리’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되어 버린 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함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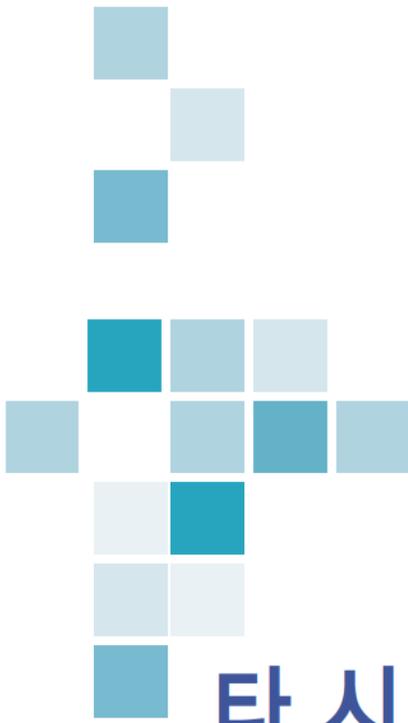
입법고문의 활동은 나의 지식이 겹겹이 쌓여 갈수록 나의 지혜는 더욱 옹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식과 지혜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끝으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보여주는 인디언 일화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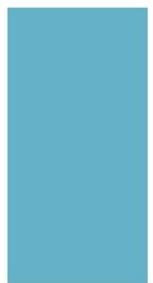
백인 마을로 이주한 인디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의 이야기이다. 스승님께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자 백인 아이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서로 떨어져서 책가방을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는 데, 인디언 아이들은 둥글게 한 곳으로 모여 앉더라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고 나무라자 인디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어려운 문제는 함께 모여서 풀라고 하셨어요.”

내 고향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치정부가 되기를 바래본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 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 산하 투자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합의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래학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서울시장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골라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낸다. 이번 협약은 17일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적용된다.

인사 청문 대상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거버넌스 강화방안도 포함해 서울시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정순 기자



대전시의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과 대전광역시 지정 전문 예술단체인 장애인인식개선오늘(대표 박재홍)이 공동 주관으로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 권리와 예술 창작 권리를 제도적으로 일반 예술인들과 동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이후 대전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전망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해보고, 향후 이 분야의 진흥을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현황과 대전시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대전시 전문예술단체인 장애인인식개선오늘 박재홍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상비 지원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만 존립이 어려운 장애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수혜자 원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전

제로 통합문화이용권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증장애인 향유계층 발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해야 할 것과 장애인 향유계층과 예술인들의 발굴과 교육을 위해서는 대전문화재단의 문화복지팀의 증원이 필요하고, 전임직 전환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제발표 의견에 대전시의회 김동섭의원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사랑 나눔 콜’ 제도와 저상버스, 특장차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 ‘를 피력했고, 문옥배 당진 문예전당 관장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심도 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자치포럼 금홍섭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다” 라고 말문을 열며, “관련정책을 주도 했던 대전시와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는 말로 시민들의 주인의식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박혜련의원은 “적절한 문화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더 소외된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을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며 “앞으로는 장애인 예술활동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진로직업 조례제정 추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1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 의원들은 저마다 진로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의원들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직업을 어떻게 실현할지 교육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입학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진로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내세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 황현 부의장, 정호영 의원, 이해숙 의원을 비롯, 도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장, 현직교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 기관과 학교의 연계 강화, 진로교육 교사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강화, 체험학습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문화된 기구와 인력 배치에 공감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진로직업 교육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바른 직업관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홍관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日 만행 강력 대응”

영토 주권 위한 경북도 역할·전략적 대응방향 등 모색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경북도의회 의정포럼과 영남대독도연구소 공동주관으로 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4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전후70년 담화(아베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사실에 대한 사죄를 외면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이 여전할 것이란 전망아래 독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인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 한철호 교수를 좌장으로 남진복 도의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곽진오 연구위원,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 계명대 이성환 교수, 대구대 최철영 교수, 경북대 박재홍 교수 등이 참석해 독도수호 방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도 영토주권을 위한 경북도의 역할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3대 왜곡주장을 지적하고, 그것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반박자료를 조목조목 발표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먼저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7세기말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일본 측 공문서가 이미 3가지나 존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허위임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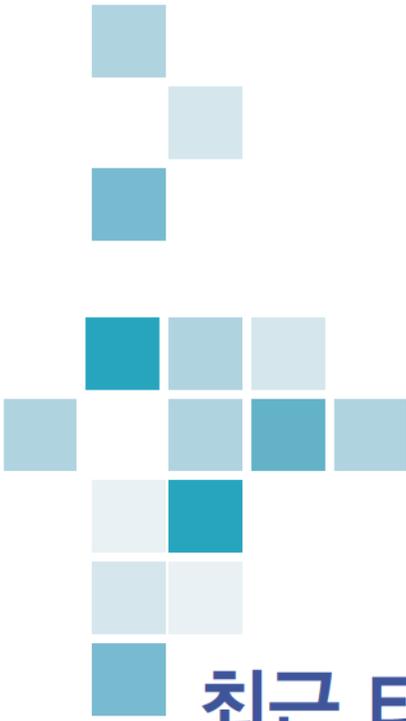
둘째,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 정식편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1904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셋째,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이 거절하였다는 러스크서한(Rusk documents)’과 관련, 러스크서한은 연합국의 합의가 없는 미국만의 견해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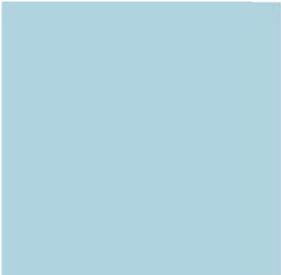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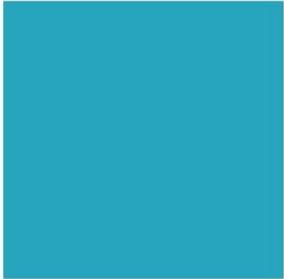
이날 토론자들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가 독도연구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의 억지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동시에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사실에 것임에 공감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회장은 “정책토론회가 독도의 영토주권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300만 대의기구인 경북도의회로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어떠한 영토침탈 만행에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8-1 조례 제4562호

□ **주요목적**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8-7 조례 제4043호

□ 주요목적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초식 가축”이란 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는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2. 세부 지원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도지사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4. 볏짚(조사료) 포장비용
5. 조사료 전문단지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의 부정수급
 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8-5 조례 제3941호

□ **주요목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유·공유 유휴토지, 농촌 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경관 창출과 소득이 되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전담을 아낌없는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정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심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도민 참여
2.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와 관련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나무심기 지원 및 포상

제13조(나무심기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숲 조성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시군과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8-13 조례 제4034호

□ 주요목적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옛 선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경상남도에 있는 길로서 주변의 역사·문화·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도민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옛길과 연결한다.
4. 옛길 조성 및 관리는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기업체·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옛길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 및 관리 방향과 목표
2. 옛길 조성·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옛길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활용 방법
4.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옛길의 조성·관리 등) ① 옛길은 해당 시장·군수가 조성 및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옛길의 구간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을 경우 관련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8-18 조례 제1326호

□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제주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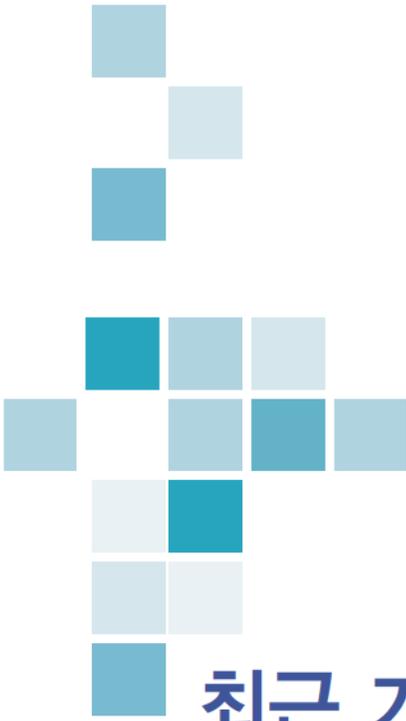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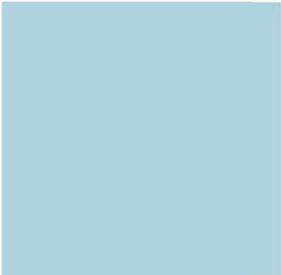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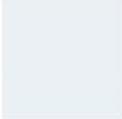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제정) 2015-8-13 조례 제1062호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영도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제정) 2015-8-13 조례 제1284호

□ 주요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제천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청구권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아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9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담당 과장
2. 제천시의회 의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서류·도면,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에게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장성군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제정) 2015-8-24 조례 제2114호

□ 주요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어져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먼지와 소음, 악취를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먼지·소음·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
3. 먼지·소음·악취 방지를 위한 군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먼지·소음·악취 예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성군이 시행하는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먼지·소음 관리) ·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의 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소음관리를 위하여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① 군수는 건축물 축조·해체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 ② 특별관리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별표 15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 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 4.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
 -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 1.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먼지·소음·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 3. 그 밖에 먼지·소음·악취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제13조(공개 및 설명회 개최) · ① 군수는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각종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사업자에게 관계기관에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먼지·소음·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정) 2015-8-10 조례 제1080호

□ 주요목적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화장품 및 뷰티기기의 제조·개발 산업
 - 나. 이·미용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4.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5. “물산업”이란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 나. 장치·기기 및 약품의 제조·판매
 - 다. 연구·기술개발
 - 라. 교육 및 컨설팅
6.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p>7.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p> <p>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p> <p>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p> <p>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p> <p>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p> <p>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5G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인재 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p> <p>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 · 활성화사업

제6조(인력 육성) 시장은 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 · 중 · 고등학생의 교육지원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3. 금형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인력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 확산)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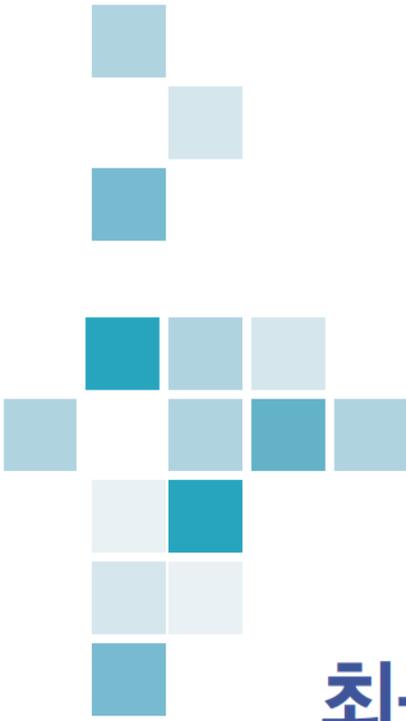
1.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 개최
2. 국내 · 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3. 강좌 및 학술발표회 주관
4. 생활과학교실 운영
5. 과학동호회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 · 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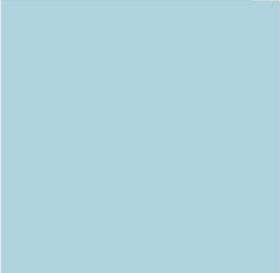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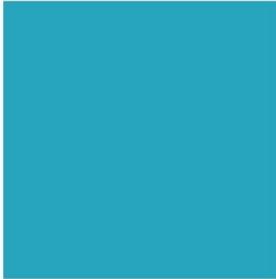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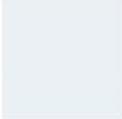
1.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국방벤처센터,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56호, 201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전통시장에서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일반 개인의 구매비중을 확대하는 등 구매처 다양화의 필요성도 있음.

이에 각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추가함(제20조).

나.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25조제1항).

라. 온누리상품권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27조).



3. 관광진흥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300호, 2015.5.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사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함(제14조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다.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9 신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문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79호, 201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의 목적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함(제1조).

나.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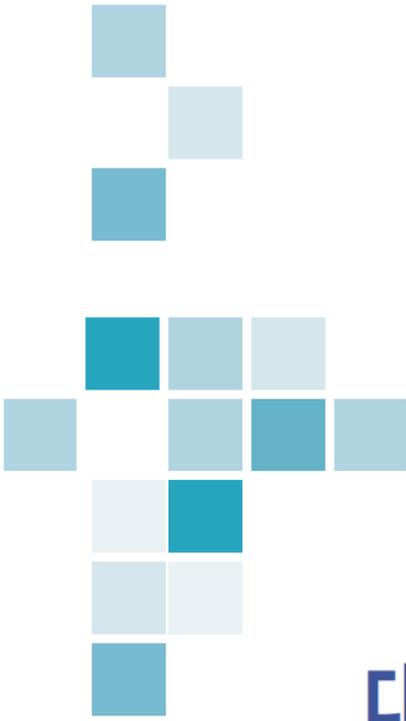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함(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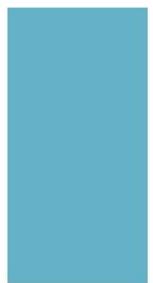
라.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현행 제19조제1항제2호 삭제).

마.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2조제4호 신설).

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판시사항】

-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3]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

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3]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5.6.24. 선고 2014추545 판결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갑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갑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승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을택시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